

불법 주·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2621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13.
제출자 : 금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원만한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및 불법(부정) 주·정차 견인 업무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,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요 위탁내용(안)

1)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(2년)

*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위탁기간은 1년

2) 위탁내용 : 불법(부정) 주·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

가) 불법(부정) 주·정차 야간 견인(22시 ~ 익일06시)

나)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(평일 07시 ~ 20시)

3) 위탁체 선정 절차 및 방법

가) 공개모집

나)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신청한 법인 중 최고 득점한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함

3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가. 「도로교통법 제36조(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)」 및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(대행법인의 업무 대행)」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- 나. 야간 견인건수 지속적인 감소 및 야간 견인 근무자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 실시 되는 야간 견인 업무의 공백 방지
- 다.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민원의 신속한 대응

4.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

가. 주요요건
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
- 2) 인력 및 장비
 - 가) 1대 이상의 견인차
 - 나) 사무소,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
 - 다) 그 밖에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도로교통법 제36조
- 2) 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제6호

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검토방법 : 서울시 자치구 운영현황 조사
- 2) 검토결과 : 서울시 자치구 모두 민간위탁 추진

관 계 법 령

도로교통법

제36조(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)

-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

제5조(대행법인의 업무대행)

- ①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·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.<개정 2008.07.30, 2015.5.14>
-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·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07.30, 2015.5.14, 2017.1.5>
-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월 두 번 지급한다.<개정 2015.5.14, 2017.1.5>

관 계 법 령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-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제4조의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

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·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2. 교육·도서관·체육·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4. 문화·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5. 자활·근로자복지·취업·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6. 교통·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